

「비대면 서비스 바우처」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(2차)

포스트 코로나 시대, 중소·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「비대면 서비스 바우처」 사업의 ‘수요기업’으로 참여할 우수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0년 10월 13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

모집개요

- 사업목적** : 화상회의,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·벤처 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
- 모집대상** : 중소기업
- 모집규모** : 80,000개사 내외
- 모집방식** : 상시모집
- 지원내용** : 비대면 서비스 도입·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(자부담 10% 포함) 이내 바우처* 지급
 - * 바우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기업을 모집·선정하여 별도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게시할 예정이며,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
- 지원방식** : 바우처 방식
 -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희망 서비스를 선택 후, 결제·이용

* 지원 중 휴·폐업 등 중단사유 발생시, 발생일을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 제한

- 지원조건** :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%(기업당 최대 360만원)까지 지원하며, 나머지 비용은 기업이 부담
- 서비스 제공 분야(안)** : 화상회의, 재택근무, 클라우드, 보안 솔루션, 온라인 교육 등 수요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

< 제공예정 서비스 분야(안) >

비대면 서비스 분야	세부 내용
①화상회의	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면접 등 비대면 채용관리 서비스
②재택근무(협업 Tool)	기업 내 임·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
③네트워크 · 보안 솔루션	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
④에듀테크(비대면 직무교육 포함)	기업 내 임·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직무교육 서비스 에듀테크를 활용한 초·중·고등 학생용 교육서비스
⑤돌봄 서비스	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돌봄 서비스
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	원격근무 도입에 따른 인사 · 노무, 보안전략 컨설팅

- * 상기 서비스 분야는 공급기업 모집·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** '에듀테크를 활용한 초·중·고등 학생용 교육서비스'는 중소기업 이외에는 '에듀테크 멘토링' 사업과 연계한 초·중·고등학교에 한하여 신청 가능
- *** "⑤돌봄 서비스", "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"은 최대 2백만원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다른 서비스 분야(①~④)와 함께 사용하여야 함(동시 이용하거나 다른 서비스(①~④)를 먼저 이용한 후 선택 가능)

2

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

신청자격

○ (신청자격) 중소기업

- * 혁신형 중소기업(벤처기업, 이노비즈, 메인비즈), 중기부 시책 참여기업, 여성기업, 청년기업(만 39세이하) 우대 (5페이지 제출서류 중 우대항목 참조)

< 수요기업 신청자격 관련 법률 >

연번	신청대상	관련 법률
1	중소기업	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

신청(지원) 제외 대상

※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* 예외 : 사업신청일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(지원) 가능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대표자 및 기업)

* 예외 :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사업신청일 전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
③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
④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*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(기업)

No	대상 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
1	일반유통주점업	56211
2	무도유통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
*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함

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대표자 및 기업)

☞ ①, ②의 ‘예외’에 해당되는 자(기업)는 신청 시, 관련 증빙 필수 제출

3

지원내용

서비스 신청

- (바우처 결제수단 발급) 선정된 기업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‘비대면 바우처 플랫폼’에서 회원가입시 선택한 바우처 결제수단 발급신청

■ **바우처 결제수단** : 바우처카드(신한 체크카드 · 선불형카드) 또는 간편결제(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) 중 택일

① **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경우**

- 개인체크카드는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, 신규 계좌개설 필요없이 보유 중인 모든 은행계좌와 연결 가능
- 법인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(기업은행, 우체국, 농협,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 가능, 단계적으로 연결 가능한 은행 확대 예정)
- 선불형카드는 온라인 발급(실물카드 미발행)되며 바우처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 가능
* 법인체크카드와 선불형카드는 '20.11월 이후부터 발급 가능'

② **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**

- 간편결제(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)는 "B2B제로페이 결제 플랫폼" 및 "비플제로페이(어플리케이션)" 회원가입 필요

- (서비스 선택) '비대면 바우처 플랫폼' 내 분야별 서비스 및 공급기업 정보를 확인하여, 희망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사전 선택(찜하기)
 - * 6대 서비스 분야 복수 선택 가능(예시: 화상회의+재택근무+네트워크보안+에듀테크)
- (서비스 신청) 필요한 서비스를 '장바구니(예약 기능)'에 담고, 공급 기업에 서비스 제공 승인요청
 - * 수요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서비스를 선택·결제하여야 함
 - ** 과기부(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등), 고용부(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등) 등의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분야 이외의 비대면 서비스만 신청 가능
 - *** 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와, 에듀테크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동일 교육과정과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

□ **바우처 사용**

- (공급기업 확인) 수요기업이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 공급기업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
- (기업부담금 입금) 플랫폼 내 '결제하기' 클릭 전, 수요기업의 바우처 사업 계좌에 기업부담금(결제 대금의 10% 또는 총사업비의 10%)을 입금

※ 단, 선불형카드 또는 간편결제(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)의 경우 기업 부담금(40만원)을 가상계좌로 선납후 바우처를 발급받아 서비스 이용

- (서비스 이용 결제) 바우처카드(체크카드, 선불카드) 또는 간편결제(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)로 바우처 플랫폼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
 - * 공급기업 승인 후, 48시간 이내 미결제 건은 바우처 사용 불가('장바구니' 자동 해제)
- (서비스 이용) 서비스 결제로 공급기업과 계약이 성사되며, 계약 내역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

바우처 사용 기간 : 지원대상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바우처 전액을 결제완료하여야 하며,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결제하여야 함

- * 바우처 결제후 서비스 이용기간은 공급·수요기업간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가능함
- * 바우처는 지원대상 확정 시 포인트로만 부여되며, 신청서비스 결제내역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음

4

신청 및 선정 절차

신청기간 : 2020년 8월 19일(수), 10:00 ~ 예산 소진 시까지

신청방법 : K-비대면 바우처 플랫폼(www.k-voucher.kr)에서 온라인 신청
 <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온라인 신청절차 >

- | | | | 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|---|
| ① |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접속 | → | ② |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* | → | ③ | 로그인 정보 입력 | → |
| ④ | 대표자 및 기업정보 입력 | → | ⑤ | 제출서류 업로드 | → | ⑥ | 담당자 정보입력 및 본인인증 | → |
| ⑦ | 결제수단 및 운영기관 선택 | → | ⑧ | 제출 | | | | |

* 사업신청 및 본인인증은 기업 대표자뿐만 아니라 실무책임자도 가능

제출서류 : 아래 서류 업로드

구분	제출서류(사본 가능)	
필수	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	공통
	Ⓑ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	
	Ⓒ 법인등기부등본	법인인 경우
우대	① 벤처기업확인서	해당 시, 택일하여 제출
	③ 메인비즈 인증확인서	
	⑤ 강소기업 인증서	
	⑦ 여성기업확인서	
	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	
	⑩ 중소벤처기업부 '17~'19년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R&D 지원사업 수행확인서(사업목록 '참고 1'(10~12쪽) 참조)	
	⑪ 청년기업(신청일 기준 대표자 나이 확인)	
		제출서류 없음

* 우대사항 ①~⑤, ⑦번 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에 한함

** Ⓛ, ⑧, ⑨번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

***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(본인 확인 불가 등) 시, 요건검토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< 신청 시 유의 사항 >

- ① 중소기업 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이 안될 경우,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신청기업에 중소기업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- ② 최종 '제출완료'한 신청자 순으로 요건, 서류 등을 검토한 후, 선정 예정
- ③ 접수마감 후, 신청내용 일체 수정 불가
- ④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, 접수된 서류 일체 삭제 불가

□ 지원대상자 확정

- **요건검토** : 신청한 순서대로 세부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 관련 내용 검토
 - * 단,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벤처기업·이노비즈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과 내일 채움공제 등 중기부 시책 참여기업, 여성기업, 청년기업(만 39세이하)은 우대
- **지원대상자 확정** : 운영기관은 요건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

< 지원대상자 확정절차(안) >

평가단계	수행기관	수행내용
신청접수	전담기관 (창업진흥원)	· 사업자등록증,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서류 제출
요건검토	운영기관	· 신청자격, 신청(지원)제외 요건 등 확인 (우선 신청자 순)
지원대상자 확정	운영기관	· 지원대상자 확정 공지

5

추진절차 및 일정

□ 추진절차 및 일정

※ 세부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공고	신청 · 접수	요건검토
중소벤처기업부 '20.8.13.	K-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(www.k-voucher.kr) '20.8.19. ~ 예산 소진시 까지	운영기관 수시
점검 및 정산 창업진흥원, 운영기관 ~ '21.9월 (정산은 바우처 사용 후 1개월 내)	바우처 사용(결제) 수요기업(플랫폼 내에서 사용) 지원 확정일로부터 8개월	지원대상자 확정 공지 운영기관별 발표 수시

6

유의사항

◆ 본 사업에 신청하는 자(기업)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본 사업은 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이 적용되며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-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.
- ③ 중소벤처기업부는 "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" 제32조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.

- 신청 순으로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선정하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개시일('20.8.19, 10:00)부터 적극적인 신청을 요함
- 신청 시 제출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(본인 확인 불가 등) 할 경우, 요건검토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관리지침, 서비스 이용·제공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함과 동시에 공고문에 명시된 목적으로 바우처를 이용(집행)하여야 함
 - * 지침은 별도 안내, 약관 동의는 '비대면 바우처 플랫폼'에서 진행
- 선정된 수요기업은 바우처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서비스 분야별 복수의 공급기업으로부터 서비스 결제·이용 가능
- 과기부(중소기업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(바우처)사업, ICT 중소기업 사이버 안전망 확충사업 등), 고용부(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사업 등) 등의 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분야 이외의 비대면 서비스만 신청 가능함. 또한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와 동 사업의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거나, 고용부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동 사업의 에듀테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음. 중복지원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, 형사고발 조치 될 수 있음
-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부, 전담기관,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본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바우처(정부지원금)를 지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(사용목적)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,

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 부과,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(R&D, 융자 등) 참여 제한, 부정당 사업자 등록 및 형사고발이 진행될 수 있음

- 선정된 수요기업은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점검 또는 관련 자료 제출·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해당 요구에 불응할 경우 수요기업 선정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은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공고문·지침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
7

기타 참고사항

□ 사업 신청 문의

- 신청·접수 시스템(K-비대면 바우처 플랫폼) 문의 : 02-6093-3500
- 사업 관련 문의 : 4개 운영기관

연번	기관명(가나다 순)	담당자 연락처
1	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	042-867-9694 042-867-9698
2	벤처기업협회	02-6331-7083 02-6331-7084
3	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(이노비즈협회)	031-628-9667 031-628-9658
4	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(메인비즈협회)	02-2230-2152 02-2230-2119

참고 1

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R&D 지원사업 목록(우대사항)

□ 창업사업화지원사업

중소벤처기업부(舊 중기청)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목록 ('17년~'19년)

-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
 - TIPS 연계지원(사업화), 창업기획사
-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
-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
- 세대융합 창업캠퍼스
- 스마트벤처캠퍼스 (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)
-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
- 재도전성공패키지 (舊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)
 - 일반형(Track 2), 투자형 * 교육만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
- 예비창업패키지(舊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)
-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(사업화)
-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
 -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, 창업사업화지원, 창업아이템 사업화
- 창업성공패키지(舊 청년창업사관학교)
- 창업인턴제 (사업화)
-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(2019년)
-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(3단계)

* '20년도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진행 중으로 우대사항에서 제외

R&D 지원사업

중소벤처기업부(舊 중기청) R&D지원사업 목록 ('17년~'19년)

- **창업성장기술개발**
 - 창업기업과제, 기술창업투자연계(TIPS)과제
- **기술혁신개발사업**
 - 수출기업기술개발, 혁신형기업 기술개발
- **제품서비스기술개발**
- **공정·품질 기술개발**
 - 제품·공정개선 기술개발,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
- **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**
 - WC300프로젝트 R&D지원, 중견기업글로벌도약 기술개발
- **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**
- **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**
- **융복합 기술개발**
- **산학연 협력 기술개발**
 - 첫걸음협력, 도약협력, 전략협력, 연구장비공동활용
- **중소기업R&D 역량제고**
 - R&D기획지원, 맞춤형 기술파트너지원,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-up R&D
- **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**
 - 구매조건부, 중소기업 네트워크형, 기술전문기업협력
- **재도전 기술개발사업**
 - 재도전기술개발, 사업전환 기술개발
- **지역특화산업육성**
 - 지역주력산업육성, 지역연고산업육성
- **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**
 - 공공연 연구인력파견지원, 연구인력 채용지원
- **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 (지역중소·중견기업 R&D산업인턴 지원)**

-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(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)
-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
 -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플랫폼 개발, K-앱시스트 기술개발
-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
- 국가융복합단지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&D
- 연구기반활용
 - 공유확산형, 연구집중형
-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
 - 산연 협력희망기업진단, 산연 협력기술개발
- 산학연 Collabo R&D (예비연구)
 - 산학협력 R&D, 산연협력 R&D
- 산학연협력 신사업 R&D 바우처
- 지역기업 개방형 혁신바우처
-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
 - 공공연구인력파견지원,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, 고경력 연구연력채용지원, 기업 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

* '20년도 R&D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진행 중으로 우대사항에서 제외

참고 2

제출서류 발급 및 문의처

분류	제출서류명(사본 가능)	발급처
필수서류	⑦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	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	④-1 국세 완납증명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	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	④-2 지방세 완납증명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	주민센터 또는 정부 24(https://www.gov.kr)
	⑨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 신청시에 한함)	등기소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
우대서류	① 벤처기업 확인서	정부 24(https://www.gov.kr) 또는 벤처인(http://www.venturein.or.kr)
	② 이노비즈 확인서	중소벤처24(https://www.smes.go.kr)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(www.innobiz.net)
	③ 메인비즈 인증확인서	중소벤처24(https://www.smes.go.kr) 또는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(http://www.mainbizgokr)
	④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	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(https://www.smart-factory.kr)
	⑤ 강소기업 인증서	한국고용정보원(http://www.work.go.kr)
	⑥ 브랜드K 인증서	중소기업유통센터(http://www.brandk.kr)
	⑦ 여성기업확인서	공공구매종합정보망(www.smpp.go.kr)
	⑧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	중소기업진흥공단(https://www.sbcplan.or.kr)
	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	중소기업진흥공단(https://www.sbcplan.or.kr)
	⑩ 중소벤처기업부 '17~'19년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R&D 지원사업 수행확인서 (사업운영기관에서 발급한 공문은 인정, 협약서 불인정)	창업사업화 지원사업 : K-Startup(http://www.k-startup.go.kr) * 창업성공패키지는 졸업장 제출(재발급은 졸업한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문의) R&D 지원사업 : SMTECH(https://www.smtech.go.kr)
	⑪ 청년기업(만 39세 이하)	신청일 기준 대표자 나이 확인(제출서류 없음)

* 우대사항 ①~⑤, ⑦ 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에 한함
중소기업 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이 안될 경우,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신청기업에 중소
기업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